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57

발의연월일: 2022. 5. 19.

발 의 자:김상훈·박대출·정우택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태영호 · 강대식 의원

(11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 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제11조의4제5항 등).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 •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했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 ④ (생 및 납부기한 등)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u>납부기한의</u> 다음 날부터 납부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할 수 있다. 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⑥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 <신 설> 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 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 액은 체납된 <u>부담금의 100분의</u>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 ⑧ (생 략)

<u>⑦</u> ~ <u>⑨</u>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